

부산지방법원 2023. 9. 19 선고 2023가단307822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8. 8.

판 결 선 고 2023. 9. 19.

##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9. 11. 1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9. 12. 17. 접수 제320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는 2012. 6. 19. C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차전17595 양수금 사건에서 'C은 주식회사 D에게 8,874,348원 및 그중 3,915,089원에 대하여는 2012.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2012. 7. 11.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D로부터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승계하여 2021. 6. 1.경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C의 부친인 E은 1966. 12. 31.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74. 6. 22.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이하 위 부동산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라.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4. 5. 30.경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들로는 처 F, 자녀들인 G(2011. 8. 26. 사망), H, I, C, J가 있었다. 이후 F이 2007. 6. 24. 사망하였고, G이 2011. 8. 26. 사망하여 G의 상속인들로 그 자녀들인 K, 피고, L이 있다.

마. H, I, C, J, K, 피고, L은 2019. 11. 17.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9. 12. 17. 부산지방법원 2019. 12. 17. 접수 제32078호로 상속재산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1/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한다.

###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 3. 판단

####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C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원고는 원물반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데 장애가 있다고 불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1)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 또는 실효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된 때 종료되어, 그때부터 시효기간이 새로 진행되고(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참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 채권자의 추심신고에 따른 집행법원의 채무자 등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 교부 시에 집행이 종료되며(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472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시효중단의 효력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에게도 미친다(민법 제169조,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7737 판결 등 참조).
-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D가 C에 대하여 2013. 10. 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2013타채25246호)을, 2017. 10. 2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2017타채58667호)을 각 받은 사실, 원고가 C에 대하여 2022. 11. 1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2022타채75272호)을 받은 사실,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C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시효소멸일 이전에

있었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추심신고 등에 따른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었다거나 압류가 해제 또는 실효되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심우승

별지

## 부동산 목록

1. 부산광역시 중구  대 34㎡2.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보강블록조 스라브지붕 2층

주택

1층 30.05㎡

2층 27.54㎡

(이상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관할 / 소유자  지분 중 1/5지분)

